

#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장 | 신영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는데, 올 한 해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

### 가. 서민 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보다 서민밀착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감시업종으로 선정하여 가격담합, 끼워팔기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을 집중 조사·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2008년에는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심 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불법 다단계거래, 전자상거래, 상조업, 대부업 등과 같이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관련 법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 표준보증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별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상품구매 및 반품절차에 대해서, 노인의 경우에는 상조서비스 및 방문판매,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 및 온라인쇼핑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작년 9월에 구축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창업비용과 평균매출액 등의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가맹금예치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 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중소기업 보호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시정 할 계획이다. 작년 12월에 구축한 '불공정하도급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단가인 하나 기술 탈취,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및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하여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지금 까지 76개 대기업이 약 2만 7,000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고 구두발주 관행의 근절, 납품단가 조정절차의 명시, 자금 및 기술지원의 확대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고 있다.

# 2.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 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동일한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으로 증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게 되고, 지주회사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대규모기업집단과의 규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제도를 5년간 적용 배제하고,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하여 소유지분율 요건과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와 같은 지주회사

## | 스포트라이트 |

관련 규제의 적용을 제외할 것이다.

아울러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이 되는 현행 혈족 8촌의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출자총액제 한제도의 폐지와 함께 도입될 예정인 기업집단공시제도에 기존의 비상장사 공시 및 내부거래 공시를 통합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공시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나. 합리적인 경쟁법 운용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경기침체기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정태적인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과 동태적인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홈플러스와 홈에버, e-베이와 G마켓 간의 기업결합 심사시 신규 진입의 용이성 및 동태적인 시장 변화까지 고려하여 승인한 바 있다.

그리고 기업결합 심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것이다.

또한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 공동행위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 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지속적 개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OECD 모델을 참고한 경쟁영향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경쟁제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업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을 분석한 자료를 소관 부처 및 해당 업계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3. 소비자의 권익 증진

경쟁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소비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공기업의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계열회사 지원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 및 원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비타민, 화장품, 골프장 그린피, 수입차 등 18개 품목을 조사하여 수입차 담합행위 등을 제재하였고, 화장품 병행수입제한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소비자 상담전화의 응답률을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전화상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소비자후생 증대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내에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의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4.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의 대응

지금까지 국내기업은 D램 반도체, 항공화물, LCD 담합 등으로 인해 미국 및 EU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약 1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중국도 작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기업들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개최 및 협력협정 체결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국제카르텔의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기업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카르텔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EU·중국·일본 등과의 조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동안 흑연전극봉, 비타민, 복사용지 분야의 국제카르텔을 적발하여 제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IT, 제약 등 신기술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신규 진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료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